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

(황영호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019 - 8 |
|----------|----------|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황영호, 윤유선, 송순효, 정정희,
김선경, 신낙형, 이충현, 경기문,
김용원, 이종숙, 김현희, 김성한,
송영섭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강서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라.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 ~ 안 제12조)

마.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 (안 제13조 ~ 안 제14조)

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진 (안 제15조)

사. 예산 등 지원과 에너지 교육·홍보 (안 제16조 ~ 안 제 17조)

아. 표창 및 시행규칙 (안 제18조 ~ 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에너지법」 제2조, 제4조,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5조,
「건축법」 제1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환경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2 . 1 . ~ 2 . 8 .) 결과 : 의견없음

2) 제정안 및 관계법령 : 붙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 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학교·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너지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너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8.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 기본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구민의견 수렴 등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에너지업무 소관국장과 에너지사업 추진에 관련된 부서장 또는 동장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1명

2.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또는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에너지업무 소관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등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유도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

③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4조(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①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에 따른 에너지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절약) ①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및 고효율제품 사용
3.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LED 및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제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2.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동절기: 난방온도 18℃ 이하, 하절기: 냉방 온도 28℃ 이상)(단, 민원실, 도서관 등 민원인 이용공간은 예외로 하며, 냉난방설비가 비전기식 냉난방 방식(GHP, 흡수식 냉동기, 축냉기 등)인 경우 동절기 난방온도 20℃ 이하, 하절기 냉방 온도 26℃ 이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공사를 계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설비(LED조명 등)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비용을 분할하여 상환 받는 방식의 에너지절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내조명기기는 LED 제품을 사용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 한다.

제1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
2. 구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3. 구민, 사업자, 시민단체와 경로당·어린이집·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시설에 대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③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시 공고에 따른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에너지관련 교육, 홍보활동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에너지관련 도서, 소책자 및 스티커 등 홍보물 또는 간행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에너지관련 홍보문구가 기재된 홍보물품을 캠페인 및 교육장소 등에서 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